

가. 쟁상담

8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20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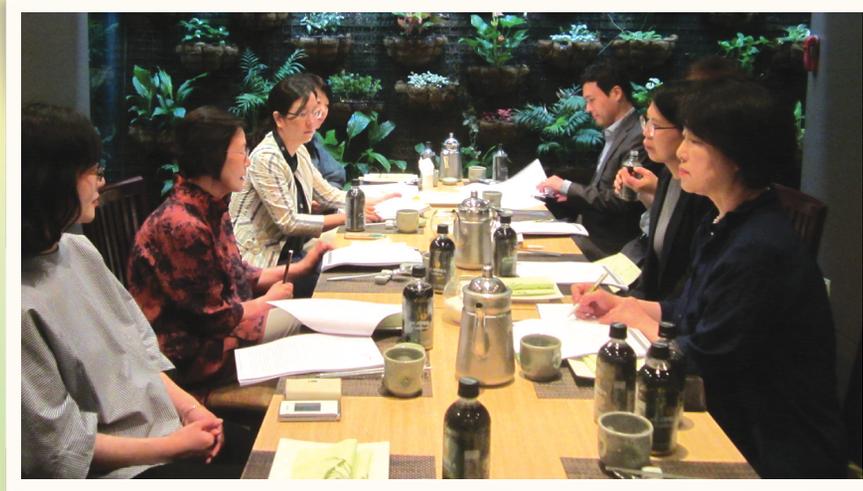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지난 7월 16일 본소 광배희 소장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상담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2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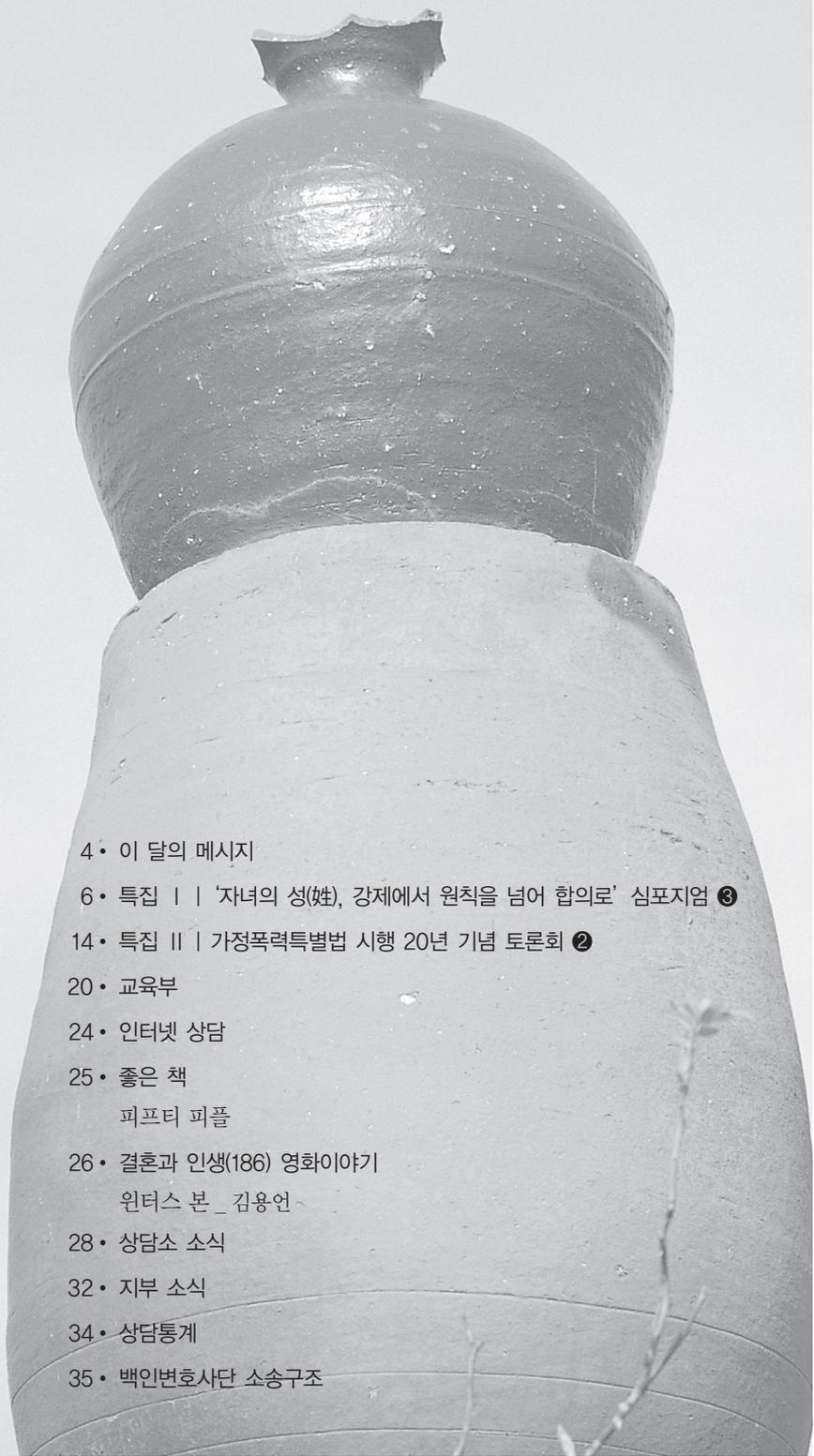
본소는 현재 진행 중인 유해인도 기획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지난 7월 5일 변호인단 회의를 가졌다. (관련기사 29면)



본소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옥계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비혼모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행복나들이' 를 진행했다. (관련내용 20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바다 그리고 새〉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③
- 14 • 특집 II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②
- 20 • 교육부
- 24 • 인터넷 상담
- 25 • 좋은 책
 피프티 피플
- 26 • 결혼과 인생(186) 영화이야기
 윈터스 본 _ 김용언
- 28 • 상담소 소식
- 32 • 지부 소식
- 34 • 상담통계
- 35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저녁이 있는 삶, 가정이 있는 삶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11년 만의 최고라는 전례가 없는 폭염, 무더위가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3주째 계속 되고 있는 이 무더위가 아직도 정점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니 난감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이번 호 <가정상담>을 받아 보실 즈음에서는 이 무더위도 한 풀 꺾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여름의 무더위는 해가 갈수록 더하고 겨울의 맹추위도 만만치 않은 기후 환경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배추 농사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가격이 떨어진 채소들을 밭에서 갈아엎는다는 소식도 있으며, 쌀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보면서 무더위도 어서 물러가고 물가도 안정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크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곧 가정이 있는 삶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워라밸'의 실현일 것입니다. 최근 많이 쓰이는 신조어 '워라밸'은 장시간인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등장한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OECD 국가들의 법정노동시간은 연 평균 1,763시간인데 비해 야근, 잔업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은 연 평균 2,069시간으로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때 이러한 장시간의 노동은 근면과 성실로 표현되어 우리 사회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주요한 한 축이 되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삶의 전반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조화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땅히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곧 가정이 있는 삶이란 말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1970년대 이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야근과 접대, 회식이 직장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정부와 기업은 이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이를 용납해 왔고 오히려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편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전적으로 어울리기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생활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해왔고 남성들은 가정과 개인생활을 모두 희생해야만 사회생활, 조직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 달여 남짓 이러한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저녁 강의에 직장인 수강생이 늘고 있다든지, 집에서 밥을 해 먹기 위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든지 하는 소식들이 그것입니다. 반면 직장인들의 회식문화가 변화하면서 사무실 인근의 식당가 저녁 매출이 부진해졌다는 보도가 있고, 한 편에서는 시간이 길어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렇듯 상충되어 보이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모두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때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일 지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며 일자리가 간절한 모든 이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지기를 그리고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매출의 부진으로 염려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그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염과 무더위도 곧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집 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③*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한 토론발표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방법 개정의 필요성¹⁾

정 미 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1. 부계혈통주의의 개선에 관한 논의의 필요

자녀의 성과 본은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는 현대적 가족관계의 가치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고유한 문화적 도구이므로 부계혈통주의의 핵심인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법정부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가족제도로서의 성과 본

가. 민법의 성과 본이 개정 전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가?

모든 권리는 절차와 취급방식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의되고 결정된다. 호주제 하에서 부여되던 성과 본의 실제적 기능은 호적에 입적하는 배우자 이외의 구성원의 일체성을 표시하는 표지의 역할에 국한되었던 것이므로²⁾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법상 혈족관계의 전반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에 규정된 성과 본의 의미는 호주제 하의 성 및 본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전통적인 성과 본의 의미와 같지 않다

현행 민법상의 자의 성과 본은 출생 혹은 인지와 더불어 부 혹은 모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부모를 알 수 없을 때 창설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자가 개별적으로 관계하는 자에 대한 가족 관계의 標識이 된다. 이는 宗法에 따라 호주가 집단적 부계혈연의 標識으로 부여하였던 성 및 본과 그 대상, 절차, 범위, 방법, 관리 내용 등이 판이하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로서의 성 및 본과 그 의미가 다르다.

* 지난 5월 11일 열렸던 심포지엄의 토론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지난 6월호 <가정상담> 28면 참조.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 1) 이 발표문은 2013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심포지엄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 축약한 것이다.
- 2) 김주수, 주석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2010), 127면. 민법개정 전 호주관련 규정은 혼인이나 상속 등 가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견해에 의함

다. 성과 본의 제도적 의미의 실질적 검토의 필요

민법 제781조의 성과 본은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서 정한 권리 보호의 범위 내에서 새롭게 도입된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개념과 혼인, 친자, 상속 등 가족법 전반의 법리를 고려하여 그 실질을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이 민법의 근거 조항을 넘어 과도하게 모의 성과 본 부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실무를 면밀히 살펴 그 실질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3. 성과 본 부여제도의 특색과 문제점

가. 부의 성과 본의 법정부여

자와 부모관계의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유독 자에 대한 姓의 부여 시 父系와 母系를 차별하여 부의 성과 본을 강제하는 것은 변모된 가족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나. 성명의 현대적 기능과 무관한 성과 본 부여

성명은 단순히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標識이 아니라 자신의 소인격을 표창하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성명은 그 주체가 선거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적 거래를 주도하며, 복잡한 행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객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개인의 姓과 본은 단순한 父系의 혈통표시가 아니므로 부와 모의 협력 하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여될 수 있도록 그 부여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 가족환경 변화의 반영 부족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하였고, 가족의 구성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하였다.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젊

은 부모들에게 부계혈통주의를 순순히 받아들일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성과 본을 협의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라. 形骸化된 성과 본의 협의부여제도

민법 제781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신고 전 협의에 의한 모성부여제도는 그 실무적 활용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마. 姓本附與權의 조화로운 이해의 곤란

자의 성과 본의 결정 과정에서 부가 협의 절차를 통하여 성과 본 부여권을 사전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모가 성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모가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만 성과 본의 부여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도 아니 된다.

바. 혼인신고 시 협의에 의한 성과 본 부여제도의 문제점

장래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 전에 미리 협의한 다음 혼인신고 시 등록하는 것이 모성의 협의부여제도의 본질이다³⁾. 또한 협의에 의한 모성부여제도는 부성의 법정부여를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한 장식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제출된 협의의 경직적 처리

민법 제781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예규를 통하여 혼인 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고(동예규 제4조 제3항), 자녀 별로 각각의 성과 본을 부여하기로 한 협의서는 이를 반려하고(제4조 제4항), 이러한 요건을 위반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동예규 제5조 제2항). 이는 민법 제781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혼인신고시의 협의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그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유효성이 의문시 된다.

3)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은 혼인신고시 협의가 없는 경우 이혼후 혼인신고를 다시 할 때 그 협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모계성부여 협의의 법정요건으로 엄격하게 정리하고 있다.

출생신고 중 요건에 맞는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을 하고 성과 본에 대해서만 개별적 처분을 함으로써 부모는 모에게 그 수리 처분에 관한 이익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며, 모든 불이익을 출생 본인인과 부 또는 모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⁴⁾.

아. 외국인과 혼인한 여성과의 차별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 제11조, 국적법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가 외국인인 자를 출생 신고할 때 모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결혼한 모와 달리, 자신의 성과 본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모는 외국인과 혼인한 모에 비하여 자녀에게 성명을 부여함에 있어 현저하게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사실혼이나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혼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 부와 모 그리고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성과 본을 부여받게 된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부의 성과 본이 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반면, 혼인 외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에 대한 접근이 그 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혼인 외의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장을 달리하여 모의 성과 본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혼인 중의 자녀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중복성 불허 문제

민법 제781조는 부와 모가 자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성과

본은 하나이고, 중복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과 본이 상징하는 혈연관계는 부계와 모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민법에서 부계와 모계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유독 성과 본의 부여에 있어 부와 모가 각자의 성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카. 여성차별금지협약의 유보

우리나라는 UN의 여성에 대한 전반적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제16조의 가족 관계에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항목은 유보를 하였다.

4. 자녀에 대한 姓名附與權受容의 다양한 모습

가. 전통의 발전적 변모

인권개념의 신장과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화롭고 평온한 가정관계의 재확립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협약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활동 등을 통하여 각국의 가족관계에서의 차별이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던 과정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父性法定附與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성의 선택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을 채택한 주는 4개 주다.⁵⁾ 나머지 주는 법률로써 자녀의 출생 시 부여되는 성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혼외자에 대한 성의 부여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주는 13개 주이고, 나머지 주는 대부분 출생 신고에 관한 행정 규정으로 자에 대한 성의 부여를 관리하고 있다⁶⁾. 연방법원은 출

4) 출생한 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상 특정인의 자로 존재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국가의 혜택이나 행정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성분부여 상의 문제로 출생신고가 지연되어서는 아니된다.

5) 루이지아나주는 부의姓을, 테네시주는 모가 혼인전의 성을 유지하고 부와 모가 모의 성을 자에게 부여하는데 동의하거나 혼인성 모의 성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의姓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뉴햄프셔주는 자에게 부여하는 성의 범위를 부 혹은 모의 성과 부 모의 결합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네브라스카는 부와 모의 성, 모의 출생시의 성, 부모의 결합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6) Laura Anne Foggan, Parents' Selection of Children's Surname, 51 Geo. Wash. L. Rev.(1983)583 3번 각주 내용 참조

생 신고 시 부모의 성 부여를 제한하는 주의 법규를 적법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⁷⁾.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명부여권⁸⁾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권리로 이해되므로 성명부여에 관한 부와 모의 의견불일치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부와 모의 의견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⁹⁾.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권을 행사하는 부와 모의 의견이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의 의견이 우선한다.

다. 독일¹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1년 부부가 혼인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성이 혼인성이 되도록 한 민법 제1335조 제2항이 양성평등원칙에 위반 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1993년의 개정법을 통하여 夫婦別姓制를 도입하였으며, 別姓制夫婦의 출생자에게 부여할 성은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성 부여 결정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성부여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결정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성이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프랑스¹¹⁾

2003년 1월 18일 개정민법¹²⁾ 제311-21조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 협의에 의하여 부, 모 혹은 부모의 중복성 중에서 선택하여 성을 부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이 친생 관계가 동시에 성립된 부모의 경우에

는 부의 성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생관계가 먼저 성립된 부모의 성으로 출생기록부에 등재하게 된다. 부모 사이에 수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초로 부여한 성을 공동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자녀동성주의).

마.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주요쟁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녀에게 성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던 민법 조항이나 관습은 변경되었고, 모성부여와 관련한 전통적 차별도 제도상으로는 대부분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5. 개정의 방향

가. 부성부여법정주의의 폐지

현재의 민법규정상 부모와 혼인중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에서 모가 자녀에게 성과 본을 물려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족법의 통일적 구성 원리를 고려하더라도 유독 혼인 중의 친자에 대하여 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성을 강제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나. 협의의 실질적 보장

성과 본의 부여 과정에서 부와 모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누구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법에 의하여 성과 본이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이 개인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7) 예외적으로 부와 모의 성이 의의명칭으로 자녀의 출생시의 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네브라스카주의 법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합헌결정을 한 제8순회법원의 판결이 있음. *Henne v. Wright*, 904 F.2d 1208 (8thCir,1990)

8) 연방대법원의 *Troxel v. Granville*, 530 U.S. 57, 60(2000)은 접근권 관련 쟁점의 다수의견에서 부모가 자녀의 출생시 성명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음.

9) 전계논문 595면 이하

10)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독일민법규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제19권 제1호(2005)를 참조함

11) 김상용,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여성부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03. 9. 25.), 제19면 이하 및 Heather MacClintock, Note and Comment: Sexism, Surnames, and Social Progress: The Conflict of Individual Autonomy and Government Preferences in Laws Regarding Name Changes at Marriage, 24 Temp. Int'l & Comp. L.J. 277(2010)293, phalphy.files.wordpress.com/2006/11/civil-code-france.doc 의 프랑스 민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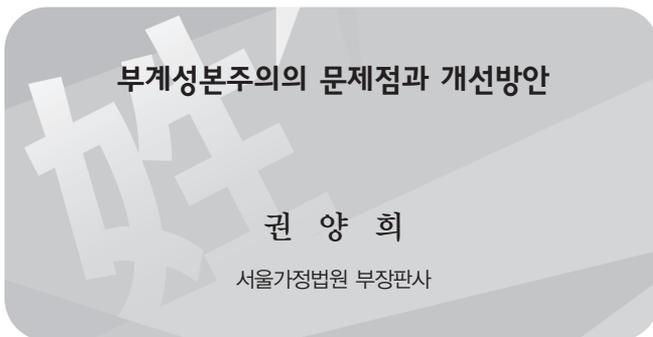
12) 2005. 1. 1.부터 시행되었음

다. 모계의 혈연표시방법 확충

성과 본의 기능이 자연적 혈족의 혈연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거나 법정친자관계나 가족공동체에서 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의 입장에서는 父뿐만 아니라 모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성과 본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6. 개정안 제시

제781조 제1항: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에게 그 지정을 통지하고, 부 또는 모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1. 들어가며

2. 부계성본주의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침해는 과연 없는가

발표자는 '부성주의는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부계성본주의는 모계를 부계에 비해 차별하고 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제한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차별한다고 지적하였다.

위 지적에 보충하여 부계성본주의와 부계혈통주의를 기

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관계인 '종중'에 관한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호 판결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라고 종중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여성, 즉 딸도 남성과 동등한 종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종원 자격 제한을 허물면서도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계성본주의는 단순한 어머니 개인과 아버지 개인의 차별이 아닌 여성조상과 남성조상과의 차별, 여성후손과 남성후손과의 차별이다. 앞으로 종중이라는 법률관계가 얼마나 더 존속할지 모르겠지만, 종원의 범위에 관한 젠더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며, 적어도 '부성주의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계성본주의의 또다른 전제, 본(本)은 필요한가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도가 모두 폐지되면서 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만 개인의 식별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적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자신의 본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¹³⁾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을 기재하지 않는 것 역시 혈통주의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자녀의 성 선택 방안을 위한 제언

발표자는 출생 시에 자녀의 성을 선택하도록 하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혼인신고 시에만 모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81조에 관하여, 혼인 후의 부의 사망, 유기, 별거 등 혼인생활의 변화로 모가 홀

13) 이재우, "통일을 대비한 북한신분등록제도와와의 통합",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173면

로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따라야만 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부부관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미리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방식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대한 협의 역시 혼인신고 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이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자녀의 출생신고 전까지는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의 성과 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방의 사망, 유기, 이혼이나 별거 등 혼인생활의 변화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 선택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결어

부계성본주의 원칙에 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이어받은 자녀들에 대하여, 혹은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들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올바른 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음도 호주제의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정착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미래의 어느 날에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편견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토론문

현 소 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2.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성과 본’은 부계혈통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오히려 가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고 있지 않은 우

리 민법의 원칙상 아무리 자녀가 혈연상 부(父) 뿐만 아니라 계부 또는 양부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도 여전히 성·본은 부(父)와 자녀의 연결고리일 뿐이며, 성·본이 다른 모(母)는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부는 혼인 성립 시에 미리 모(母)의 성·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난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후적으로 모(母)의 성·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위에서 밀린 부(父)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 전체의 주류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한 가정 전체가 소외의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지 않는 한, 누구의 성과 본을 택하더라도 성과 본이라는 제도가 가족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은 우리 법의 구조상으로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3.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그 자체로 존엄하며, 어떠한 혈통으로부터도, 어떠한 가족으로부터도 독립한 개체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과 이름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통의 흔적에 불과하며, 성·본은 이름이 같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조금 더 손쉽게 특정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양한 성·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양성 평등의 문제이기 이전에 개인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4. 이미 세계 각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부부와 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성(母姓)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현실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자의 견해에 적극 찬성하며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1)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성(姓)을 선택하는 시점을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연기한다는 것은, 첫 자녀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성(姓)은 반드시 첫 자녀의 성(姓)

을 따라야 한다는 자녀 동성의 원칙을 지지하시는 것이지요? 부부동성(夫婦同姓)의 원칙을 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의 구조 하에서 자녀동성(子女同姓)의 원칙은 무엇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런지요? 혹시 자녀동성(子女同姓)의 원칙이 오히려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는 없을런지요?

(2)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부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성·본 결정의 객관적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미리 법에서 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런지요?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맡겨 놓는다면, 현재의 하급심의 성·본 변경 허가 실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녀의 복리’라는 명목 하에 부성(父姓)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프랑스의 예와 같이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본 협의가 없으면, 부모 양성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오히려 양성 사용이 자연스러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지요?

(3) (2)와 같이 양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본(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연적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4) 또한 (2)와 같이 법에서 양성사용을 일용의 기준으로 제시한다면, 굳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 현재도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일이 출생일로부터 30일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긴 편이어서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姓)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결국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 때 성(姓)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도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발표자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한 토론문

신 옥 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문제제기

인지 후 자녀 성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다는 기본적 시각과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2. 현재 2005. 12. 22. 2003헌기5·6(병합) 결정의 문제점¹⁴⁾

첫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부성주의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다수는 부성주의를 가족 내에서 모를 부계의 혈통을 계승할 수 있는 자녀의 생산기능을 가지는 부차적 지위에 머무르게 하므로 제36조 제1항의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부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성주의의 위헌성을 치유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결정에서 판시한 것처럼, 헌법은 모든 국가질서에 바탕이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라고 할지라도 양성평등한 가족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념과 상치되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성주의원칙은 생물학적인 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제도인데, 이는 자녀의 성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다.

넷째, 부성주의원칙은 부부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서 보호되는 부모의 자녀의 성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

14) 신옥주,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고찰, 암법학, 43호 343쪽 이하.

다섯째, 부성주의원칙은 한 인격체로서의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고 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와 가의 계승을 위한 성의 계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현행 민법 제781조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1) '제1항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

제1항은 부성주의원칙의 예외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자녀가 모성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성주의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규정은 부성주의원칙의 위헌성을 치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결정하여 모성을 자녀의 성으로 쓰게 하는 것은 현실성을 상실한 규정으로 부성주의의 위헌성을 위장하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먼저 혼인신고 시 남녀가 자녀의 성에 대한 합의를 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성에 대한 남녀의 합의가 혼인신고 시 부존재하는 경우 부성이 자녀의 성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부성주의원칙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만일 혼인을 앞둔 남녀가 자녀의 성을 결정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혼인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혼인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지 시 자녀의 부성으로 변경'의 위헌성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과 관련한 현실을 보면, 동조 제1항과 제5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인지된 자녀에게 부성주의원칙이 적용되어 통상 자녀는 부성을 갖게 되고 부모가 예외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종전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에 관한 위의 규정은 친권자인 모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부를 중점에 두고 성의 변경을 규정한 결과이다. 혼인하지 않고 단독친권자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는 자녀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 않고, 그동안 모의 성으로 살아온 자녀

의 복리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4. 개정방안

(1) 법정혼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차별적 용어의 개정 필요성

민법 제844조, 제855조, 제781조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¹⁵⁾에서는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을 자와 혼인외 자로 구분한다. 임신과 출산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써 혼인이 그 전제가 되지 않는다. 아동에게 태어날 때부터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하였음을 암시하는 혼인외 자의 표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의 재생산권의 행사를 통해 태어난 아동을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언어적 차별이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의 경우 민법상 아동관련 규정들의 개선을 위하여 1997. 7. 1. 아동개혁법이 제정되어 혼인 중의 아동과 혼인외의 아동사이의 구분을 철폐하였다. 이를 통해 민법 출생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아동의 상속에서의 평등이 구현되었다.

(2)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녀성의 결정 필요성

원칙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성주의원칙을 폐기하고 부모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성 부여를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은 부부가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독일과 같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부성주의원칙의 폐기가 어렵다면, 제781조 제1항의 단서를 개정하여 혼인신고시의 합의가 아니라 출생신고시의 합의에 따른 자녀의 성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원칙이 폐기되지 않고 단지 단서조항만이 수정된다면, 동조 제5항도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성을 사용하며,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집 ②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②**

주제발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

이 서 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199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사이며 국가가 개입해야 할 범죄행위로 변화되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그간 사회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1. 가정폭력 실태로 본 성과와 과제

1) 성과 : '가정폭력이 줄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은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 2013년 7.2%, 201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 과제 : '정말 가정폭력이 줄었을까?'

2016년 기준 부부간 가정폭력률은 3.7%로 16년 전인

2000년 34.0%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비가시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근절되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3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의 모든 폭력유형에서 절반 이하로 폭력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폭력유형 가운데 정서적 폭력만 두 자리수로 2013년에는 무려 36.1%, 절반 이하로 감소한 2016년에도 12.5%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소에서 만나는 행위자들의 2013년 이후 가장 큰 변화도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경제적 폭력의 등장이었다. 최근에 와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통제다. 배우자의 행동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통제행위가 그것이다. 가정폭력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지배와 통제행위이다. 신체적 폭력은 배우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통제는 가정폭력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행동이 37.7%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감소하거나 근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van Stark의 강압적 통제론(theory of coercive

** 지난 6월 29일 열린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로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하였다. 이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에서 볼 수 있다. 토론회 관련 소식은 지난 7월호 <가정상담> 31면 참조.

control)의¹⁾ 문제의식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폭력보다도 그에 전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강압과 통제의 패턴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Stark는 가정폭력의 핵심을 ‘통제’라고 재개념화하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재정의한다.

이러한 Stark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정책에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영국은 2015년 England와 Wales의 법으로 Serious Crime Act 2015를 개정하면서 Part 5에 Section 76을 신설하였다²⁾. 이 조항은 가족구성원(또는 가족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 사이에 발생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패턴화된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통제를 중심으로 정의한다.

2. 정부의 성과와 과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20년 동안 쉬 없이 지속하고 있는 핵심 주체이다.

1) 행위자 치료

(1) 성과 : ‘행위자 성행이 교정되고 있다’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제도는 크게 상담 위탁과 수강명령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하는 제도는 상담위탁이다. 상담위탁은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어 법정에 선 행위자에게 법원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폭력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선 가정

폭력상담소에서 시행하는 행위자 상담 치료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2) 과제 : ‘행위자 매뉴얼을 따라가도 되는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일선 기관 지원 및 평가 그리고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의 노력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 평가항목에 실제적인 행위자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과제라 하겠다. 두 번째 과제는 표준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2) 피해자 보호

(1) 성과 : ‘피해자는 도움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장 긴급한 위기개입에서부터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쉼터 입소 및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동반자녀에 대해 학업, 심리치유, 취학 및 비밀전화 등 지원서비스 제공,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지원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 직업훈련, 쉼터 퇴소 후 임대주택 제공-을 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대리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신변 보호제도도 강화되었다.

(2) 과제 : ‘더 많은 피해자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이 폭력을 피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해 왔고, 2014년부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

1) 민운영, 『부부간 심리적 폭력의 실태 및 범죄화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보고서, 2016

2) Serious Crime Act 2015의 Part 5 Section 76은 경찰과 기타 법집행 기관들이 심각하며 조직적인 폭력 범죄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총 여섯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점점 보편화 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사후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자립정책이자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정책일 수 있다.

해외 입법례의 경우, 미국은 2017년 10월 31일 발의된 연방법 및 2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휴가법, 그 외 범죄피해자 고용보호법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해고의 우려와 직장 내 차별 없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범죄피해의 회복과 안전 도모를 위한 휴가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는 지난 2016년 법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온타리오 주는 근로자와 그 자녀가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실직에 대한 우려 없이 17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호주의 퀸즐랜드 주정부는 2017년 가정폭력 휴가제 도입으로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에게 유/무급의 휴가를 보장하여 가정폭력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이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시설위주의 지원정책을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사법체계의 성과와 과제

1) 경찰의 성과와 과제 : ‘힘과 전문성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인가?’

경찰의 성과를 요약하자면 권한은 적지만 전문성을 갖추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문화를 위해 노력한 경찰의 첫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 요인 및 경찰의 출

동시 조치에 대한 신뢰 향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은 2014년 3월 2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선발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들을 배치하였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여성·청소년수사과라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찰의 과제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초기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의 극복을 들 수 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소극적 자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힘과 전문성이라는 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 즉 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힘은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해 안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간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폭력행위 제지 및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의료기관에 피해자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출동해도 행위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경찰은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전문성 구축을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가정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APO는 관서별로 재발우려 가정의 수를 고려하여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을 규정하는 가정폭력 사건 관련 매뉴얼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국적·장애 등의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신고접수→현장 도착→현장 떠나기 전→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 소속 경찰관 대상 교육이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식의 편차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찰청이 실시하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검찰의 성과와 과제 : '더 정교해질 수 있을까?'

최근 2016년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51.2%가 불기소였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율은 38.2%, 기소율은 8.5%에 그쳤다. 2011년의 경우에는 불기소율이 64.1%에 이르렀다. 이는 검찰단계에서 가정폭력사건의 절반 이상이 더 이상 문제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분에서 검사의 사건처리 재량이 매우 크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선별검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전조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검찰단계에서 결정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 시, 피해자 의사에 대한 재조사 명령을 통해 장기간 진행된 수사 및 심리 과정 상 피해자의 안전 상태 변화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피해자가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이용했다면 상담기관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

3) 법원의 성과와 과제 : '더 세심해질 수 있을까?'

법원에서 가정폭력 사건 판결 결과를 보면 2명 가운데 1명이 불처분되는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향후 판결 전 보다 세밀하게 가정폭력의 전력과 위험성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보호처분 내용과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가정법원에서는 점차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상담을 통한 치료·교정 방안을 선호하게 되어 보호처분 중에서는 상담위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 결과 상담현장에 과거보다 많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위탁을 받고

참여하고 있어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 및 폭력재발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담현장에서 체감되는 법원의 변화는 부부를 함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과 가정폭력 발생 이후 상담에 참여하는 시기가 빨라진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의 가사조사관 역시 부족하다. 2015년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본 도쿄가정재판소에는 117명이 배치되어 있다.

4. 가정폭력 상담의 성과와 과제

가정폭력상담의 목적은 가정폭력특별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의 살을 돋게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폭력 상담기관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을 통해 상담의 효과와 향후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 체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큰 축, 즉 ① 상담 ② 교육(교육강좌) ③ 캠프(부부캠프)를 중심으로 6단계(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 음주문제상담 - 집단상담 - 교육강좌 - 부부캠프 - 최종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상담 역시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①상담에 집단상담의 변형된 형식을 띄고 있는 자조모임과 자조모임이 확대된 캠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이전 부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로

서 부모에 대한 상담체계도 마련하여 행위자 상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체계, 상담자, 상담기관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상담체계, 상담자, 상담기관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행위자 상담의 효과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담체계의 전문성

현재의 6단계 체계는 검증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전문적인 상담체계이다.

6단계의 시작과 끝은 개별가족 단위에 대한 상담이며 중간과정은 집단 단위의 상담과 교육이다. 즉, 개별 가족의 폭력문제의 특수성을 진단한 후 집단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를 교정하고 개별 가족의 특수한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지속할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개인으로 시작하여 개인이 모인 집단에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구조이다.

음주문제 상담과 교육 강좌는 특히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단위 프로그램이다. 집단상담에서 행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정폭력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폭력 발생이다. 음주상담을 특화하여 구조화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수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내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적인 왜곡과 관계에 대한 기술 부족은 단지 집단상담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원리 안내와 실천 방법 제시가 보완될 때 바람직한 해결이 가능하다. 등지고 실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강좌는 이런 면에서 집단상담의 취약점을 든든하게 보완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 성행교정의 핵심 프로그램인 집단상담을 중심으로 양 날개에 해당하는 음주상담과 교육강좌를 배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체계라 할 수 있다.

(2) 상담자의 전문성

집단상담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년간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정신과전문의, 교수, 현장 상담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고, 각 프로그램에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전문성을 담보해 왔다. 특히 특수분야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집단을 인력 풀로 구성함으로써 처음부터 비전문가가 상담할 여지를 없었다.

(3) 상담기관의 전문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정폭력 문제를 상시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상담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누적된 자료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상담의 틀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정폭력 상담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상담의 효과

행위자들은 집단상담에서 처음 참가할 때는 '이런 상담을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저항이 심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상담회기가 지날수록 음주상담, 교육강좌를 동반한 집단상담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항과 반발이 사라진다.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집단상담을 묘사하는 표현은 '인생학교'라는 것이다. 살면서 놓치기 쉬웠던 부부관계의 원리, 부모자녀관계의 이치를 상담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고, 이를 실천한 결과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행위자 상담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으로 부부문제와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던 성향과 태도를 자각하게 되고 이를 변화시킬 원리와 구체적 방법을 알게 된 후 이를 직접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부부캠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처치유와 현실적 대응방법에 대한 집단상담 이후 행위자와 함께 하는 부부캠프와 피해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캠프를 통해 부부간 관계 재정립, 피해자의 내적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3)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의 과제

(1) 상담자 역량 강화

처음부터 전문상담자로 상담자 풀을 구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담경험을 제공하고 보완을 거쳐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하도록 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델은 향후 지향해야 할 상담자 전문성 역량 증진 방법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2) 엄한 처벌과 상담치료의 병행

현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양상을 보면 배우자 살해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폭력은 아직 여전하고 신체적 폭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서, 경제, 통제 같은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분노와 음주는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양대 축이라 할 만큼 상담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자신이 폭력을 하게 된 원인으로 드는 자기 진단인 동시에 강하게 해결을 원하는 문제이다.

한편 분노와 음주는 분리된 문제로 나타나기보다 상호 결합되어 폭력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분노와 음주 두 가지를 결합한 분노와 음주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노와 음주의 공통점은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인 동시에 다른 문제와 연결고리가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움직임의 하나는 감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음주는 분노를 표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분노로 대표되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감정을 이해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근원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2018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새로운 교육강좌로 감정관리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분노를 포함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감정을 선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원

리와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II. 나가는 말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20년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눈앞에 두게 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가정폭력률의 감소다.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다. 가정폭력률은 감소하고 신고율은 증가한 현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정부, 사법부, 상담현장의 세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정이다. 정부와 사법부와 민간은 서로의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서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보완할 점을 호의로 전달할 때 더 빠른 개선과 보완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실이다. 정부는 가정폭력의 개념이 신체적 폭력에서 통제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동향을 반영하여 신체적 폭력 감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행위자 성행교정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도 보다 많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신속한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의 특성을 보다 깊이 고려하여 높은 불기소와 불처분의 비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담현장에서는 상담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상담소의 시스템을 전문화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유연이다. 상습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엄벌로, 심리적인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상담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 일 시 : 2018년 7월 21일(토) ~ 7월 23일(월)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44명, 자녀 41명, 애란네트워크 직원 등 12명
상담소 직원 2명, 상담소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탁아지원자 등 20명
총 119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법률강의를 비롯한 캠프일정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숙소배정을 받고 점심식사와 해변에서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상담소에서는 캠프기간동안 아기와 엄마의 즐거운 캠프 활동을 위해 간식꾸러미와 버블건, 튜브, 입욕제, 비치백 등을 마련하였다.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본소)

○ 프로그램 개관

1일차 7월 21일 (토)

「오리엔테이션 및 해변 물놀이」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 정도 걸려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저녁 식사 후 진행 된 법 교육에서는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와 개별면접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주로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등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밖에도 비혼모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빚, 은행대출, 핸드폰요금 연체 등의 생활고로 인한 채무관련 상담 시간이 있었고 파산·면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자녀를 위한 활동시간」

엄마들이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3개 반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각각 활동시간을 가졌다

「4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미술활동」

▷강사 : 이영옥 소장, 허소임 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아동들은 전지 위에 자유롭게 팔을 뻗어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그려본 후, 준비된 여러 가지 색과 크기의 원 모양 스티커를 팔을 뻗어 위로 아래로 리듬에 맞추어 붙이고, 넓게 펼쳐진 원 모양의 점들을 색깔 테이프로 길고 짧게 연결해 보았다. 움직임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점과 선과 모양들은 아동들이 함께하는 첫 미술적 시도로 서로 연결되고 조절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벽에 전지를 붙인 후 아동들이 벽에서 포즈를 취하면 치료사가 몸을 따라 선을 그어서 그려주고, 아동들은 선으로만 표현된 자기 모습을 색습자지, 스티커, 반짝이 테이프, 스펅글 등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꾸몄다. 자기표현뿐 아니라 성취감 경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미술활동을 원하지 않거나 미숙한 아동들은 아이클레이로 자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모든 아동들이 즐겁게 미술활동에 참여하였다.

「7세 이상 아동을 위한 공감놀이」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아하교육컨설팅 대표)

강사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 아동들이 함께 팀을 나누어 ‘등으로 말해요-숫자 맞추기’, ‘가위바위보 내 짝을 찾아라’, ‘얼음을 외치면-공을 피해요’ 등의 게임을 하며 어색함과 긴장을 풀고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얼음-피구 게임에서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얼음인 아동들을 공을 든 술래로부터 보호하며 아동들이 신나게 뛰고 멈춰서기를 반복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친구,

동생, 형, 누나들과의 관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2일차 7월 22일 (일)

「가족소통 체험활동-경포 아쿠아리움」

경포 아쿠아리움에서 참가자들은 아름답고 신기한 여러 생물들을 아쿠아리스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고 마침 수달과 펭귄들의 식사시간이라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겼다. 자녀의 방학 과제 중 그동안 힘들었던 체험학습일기를 제출 할 수 있겠다며 엄마들이 더욱 흐뭇해하였다.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해변물놀이 시간, 참가자들 중 원하는 사람들은 바나나 보트 탑승체험을 하였다. 해변에서는 자녀들과 모래놀이, 해수욕, 유아들을 위한 유아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준비된 그늘막 아래서 준비된 옥수수과 간식을 먹으며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해변 물놀이에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유아들과 함께 놀아주어 엄마와 아동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엄마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강사 :

이연희 (송실대학교 외래교수, 스타일위크 수석 컨설턴트)

최지은 (한국패션강사협회 교육이사, 스타일위크 수석 컨설턴트)

저녁식사 후, 엄마들은 ‘한 곳 차이로 달라지는 이미지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신감 넘치고 호감 가는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 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색과 조화를 이뤄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하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었다. 강사는 엄마 한 사람씩 퍼스널 컬러를 찾은 후 머리 색, 메이크업, 의상, 액세서리 등 개인에게 맞는 연출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페이스 라인에 따른 화장, 머리 모양 등의 조언도 함께 해주어 참여한 엄

마들 모두가 강의시간 내내 집중하며 힘든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잠시 잊고 잠시나마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7세 이상 아동을 위한 놀이활동」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아하교육컨설팅 대표)

강사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 아동들이 함께 팀을 나누어 ‘가위바위보-뼈뼈머리 만들기’, ‘고깔을 피해 지그재그 이 어달리기’, ‘제기차기’, ‘해봤나 공두개로 축구하기’ 등의 게임을 하며 어제 활동에 이어 서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규칙 지키기, 배려하기, 기다려주기와 함께 게임에 이겼을 때의 성취감 뿐 만 아니라 게임에 졌을 때의 감정을 서로 위로해주는 것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4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활동」

▷강사 : 박인희, 최희정 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아동들은 공간탐색, 내 공간 두들기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후프스카프 흔들며 친구찾기, 공 주고받기, 계란후라이놀이, 풍선 자루에 담기, 풍선자루 앉아서 팡팡팡, 풍선자루 리듬맞춰 두드리기, 풍선터널 지나가기, 풍선터널 지난 후 변신하고 포즈, 엘리베이터놀이하며 내가 되고 싶은 것으로 변신, 오늘 가장 즐거웠던 것으로 소감나누기를 하였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던 아동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순서를 지키게 되었고, 그룹이 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끝난 후 함께 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며 친밀감이 더욱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일차 7월23일(월)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강사 : 추치영 강사(대한주택공사, 강릉권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비혼모 가정이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자세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로 참가자들의 집중을 높였으며 주거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 이후에는 별도의 강의실에서 장기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자격 및 임대주택 관련하여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 참가자들의 소감

박**

이번 캠프는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무엇 하나 빠짐이 없었던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간식이나 기념품까지 세심하게 마음 써주신 게 느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 탁아를 맡아주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걱정 없이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영유아일 때는 서툰 육아가 당황스러웠고 12살이 되고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교육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남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갔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캠프에 오게 되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도 사춘기라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많이 자랑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 엄마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김**

저는 새터민으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서 바다 구경도 하고 너무 행복한 2박3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3일 여름캠프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가족과 같이 왔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캠프가 너무 좋았고, 같이 오신 분들을 보며 “혼자서도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구나.”라는 걸 더욱 더 느꼈습니다. 아이와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아이와 함께하는 첫 바다여행이라 무척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월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늘 더웠는데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2박 3일을 지내 행복했습니다. 이튿날 아이가 바다에서 잘 놀고 돌봄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와의 외출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 곳곳에서 저희의 어려움을 돕고자 애써주셔서 감동이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늘 혼자 감내했는데 이곳에선 여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어 힘이 납니다.

김**

모든 것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법교육과 칼라메이킹 등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해변 자율활동도 좋았고 가족 추억 만들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직장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보육시간이 직장 근무시간과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 양육비판결을 받아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빚, 채무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 임대주택 입주 기회와 입주기간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와 생계비가 없을 때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엄마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를 간병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 임플란트, 교정 등 다양한 치과 치료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이 잘 맞지 않아 보육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올바른 양육 방법 교육과 엄마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 정리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혼모들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본소의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비혼모와 비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조은경 상담위원



인·터·넷·상·담

Q

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에서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니 어머니와 같은 종중의 종중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요구가 타당한 것일까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에서 어머니 성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종중에 관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여성중회회원확인 판결), 성·본 변경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써의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된 점, 우리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그와 같은 헌법상 원칙에 따라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출생 후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 종원의 후손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며,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

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상고하여 아직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성에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이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여성 종중원의 후손에게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피프티 피플

정세랑 장편소설
창비, 2018

송수정, 이기윤 ... 배운나 ... 고백희, 소현재, 그리고 사람들, 이 책 『피프티 피플』의 장은 이처럼 51명의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름'이라 ...

1999년 봄의 어느 날, 출근길 버스에서였다. 뉴스에서 씨랜드 참사라 부르는 그 사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 애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에게 벌어진 있을 수 없는 그 일. 뉴스에서 사망자의 이름이 흘러나올 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버스 안에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 대한 바람과 정성을 담아 부모가 지어줬을 그 이름, 그 이름을 불과 몇 년 밖에 쓰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 그 이름이 그렇게 안타까웠다. 세월호도 그랬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유가족'을 만들어 왔다.

『피프티 피플』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창비의 블로그에 연재되면서 50명의 주인공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환자, 방사선기사, 간호사, 보안요원, 이송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씨실과 날실처럼 정밀하게 교차하면서 대단원에 이르게 된다. 씩크홀 추락사고의 최애선과 배운나가 있고, 장유라의 남편이자 오정빈의 아빠는 대형화물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한규익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며, 김성진과 지연지를 통해서 성소수자의 시선을 읽을 수 있고 이수경을 통해서 낙태와 피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참사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참사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들여다보면서, 이름 한 줄 뒤에 있는 그들의 삶, 그들과 얽힌 또 여

러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게 한다.

최애선은 씩크홀의 피해자인 배운나의 시어머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위해 팔을 든 부적주머니를 만든다. “두 며느리를 생각하자 딸과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자식이 넷이구나, 넷, 보살이 아니라 아수라가 되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자식이 넷, 그러나 그 아이들을 지킬 건 팔밖에 없고, 팔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과적을 막자는 화물연대의 집회를 보고 자신이 먹으려던 샌드위치를 건네는 아내 장유라나 참사를 목전에 두고 보다 젊은 애들을 위해 자신들이 뒤에 서야 한다고 마음먹는 노의사 이호나 이송기사 하계범을 보면 많이 잃었던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대목에서 이 작가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참 따뜻하구나 생각하게 된다.

작가 정세랑에 대해서 책의 날개에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발표한 작품만 간결하게 나와 있어 더 인상 깊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초기에는 장르소설에 주력했고 문학상을 받고 싶어 순수문학 작품도 병행해서 쓰면서 바람대로 여러 상을 받았으며, 작가 자신의 인터뷰를 보면 오타쿠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오타쿠들의 여왕이 되고 싶다고 했다. 장르소설의 열혈독자로서 기꺼이 그녀의 시녀가 되어 여왕으로 모실만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작가는 세월호 추모 304 낭독회에 참여했으며, 이 작품 『피프티 피플』로 제50회 한국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 (18b)



윈터스 본 (2010년)

감독 데브라 그래닉

출연 제니퍼 로렌스, 존 호키스



미국 미주리 주의 산골 마을 오자크,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에서 열일곱 살 소녀 리(제니퍼 로렌스)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엄마와 어린 두 동생을 돌본다. 먹을 거라고는 이웃집 사람이 갖다 주는 감자 약간과 소뼈로 끓이는 스투뿐이다. 리가 애지중지하던 말에게는 나흘째 건초를 먹이지 못했다. 아빠 제섭은 마약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교도소에서 실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경찰이 리를 찾아와, 아빠가 집을 담보로 보석금을 낸 뒤 교도소에서 나가 종적을 감췄다면, 선고 당일 출두하지 않으면 이 집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가족들의 터전인 집을 지키기 위해 리는 아빠를 직접 찾아 나선다. 하지만 아빠의 행방을

알고 있을 법한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오히려 그녀에게 더 들쭈시고 다니지 말라는 협박만 되풀이한다. 특히 삼촌 티어드롭(존 호키스)의 침묵은 더 이해할 수 없다.

상상하기 힘든 지독한 빈곤과 절망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회색빛 땅. 약간의 농업과 임업만으로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 그들 중 대부분은 마약 제조로 돈을 벌고 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2010년 한 해에만 오자크 지역에서 마약 제조실 2000여 개가 영업 금지 당했다는 기사를 읽고 있노라면 압담해진다. 영화 속에서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은 이곳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의 폭력의 공모자이거나 방관자이거나 혹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 약자일 뿐이다. 적어도 주인공 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렇다. 여기서는 오로지 개인의 힘이나 두뇌나 배짱에 의존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아버지든 공권력이든,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리는 자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이번 딱 한번만,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라고 거듭 묻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다.

〈윈터스 본〉에서 리가 맞닥뜨린 삶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동으로 점철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들과 엄마에게 먹일

감자를 굽고, 동생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입을 열지 않고 은은한 미소만 짓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빗기고, 몸을 녹일 장작을 도끼로 깨고, 차가 없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씩 걸어 다닌다. 그러나 리는 이런 일상마저도 간신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표정 없는 얼굴은 생존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듯 보인다.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어린 동생에게 장총을 쥐어주며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다람쥐를 잡은 다음 내장을 제거하는 법과 그걸로 요리하는 레시피를 알려줄 때 리의 표정은 단호하다. 밀렵 반대라든가 총기 규제에 대해 목청 높이려는 마음이, 이 짐승 같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법외에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소녀의 얼굴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리가 아빠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빠가 살아 있고 반드시 범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더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경고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의 굳은 얼굴에서 리는 조금씩 아빠의 죽음을 예감한다. 그렇다면 리에게 남은 수단은, 아빠가 도주한 것이 아니라 죽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살아있어서 범정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가장의 책임을 다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을 다하던가. 지

금의 리에게 사실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가족의 생존'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겨울의 뼈'라는 수수께끼 같은 제목의 의미는 영화의 충격적인 클라이맥스에 이르면 충분히 유추 가능해진다. <원터스 본>은 2010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 여우주연상 및 남우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제니퍼 로렌스 명성의 시작점도 바로 이 영화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 · 소·식



본소 광배희 소장, 대법원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

지난 7월 16일 본소 광배희 소장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소는 1956년 민간단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은 물론 가족법개정운동과 법의 생활화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담소의 역사적 위상과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헌신은 민간단체로써 본소가 입법, 사법, 행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소는 지금까지 대법원의 특별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

특히 본소는 법률구조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소송구조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행정처 프로젝트는 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본 상담소 전국지부의 소송구조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 날 광배희 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부부평등, 성평등의 관점에서 현재 본소가 진행 중인 유해인도 소송과 민법의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개정 그리고 본소가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어 온 북한 지역 지부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담소의 근본적인 방향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본소, 유해인도 기획소송 관련 변호인단 회의 대법원 상고 앞두고 변론 계획 논의

본소는 지난 해 말 상담 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의 유해인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11.20. 선고 22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사주재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유채인도 등에 관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기획소송을 진행해 왔다. 동 판례에 의하면 제사주재자에 대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양성평등에 입각한 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사회 법질서 변화의 흐름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이 판례는 이미 폐지된 호주제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 장남과 다른 자녀들과의 차별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2017가합1*** 유해인도) 지난 2017년 11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에서 변론종결 되었으며 2017년 12월 22일 판결선고 결과 기각이 되었다. 이어 곧 항소가 진행되었고 (2018나2***** 유해인도)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서 지난 2018년 5월 2일 변론종결, 2018년 6월 20일 판결선고 결과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

이에 본소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지난 7월 5일 변호인단 회의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변론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및 본소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참석하였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이명숙(나우리 법률사무소),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천정환(법무법인 현정)

(관련사진 2면)

이레상담교육원 본소 기관방문

7월 11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25명이 법률구조체험교육의 일환으로 본소를 방문하였다. 교육생들은 우선 본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김진영 상담위원의 진행으로 본소에서 다루었던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사례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끝난 뒤에는 상담소 내부와 상담소 60주년 기념 사진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교육생들은 본소의 법률구조 사례와 소송구조절차 및 대상, 각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법률구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 본 상담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업무 협업 간담회

7월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부 이재근 차장과 오지현 과장이 본소를 방문하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업에 관해 간담회를 갖고 추후 양 기관간의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소 전화 자원봉사자 재교육

지난 7월 19일 본소 전화 자원봉사자들은 재교육의 일환으로 국립 중앙박물관의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관과 신안해저 문화재를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였고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강경숙,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홍진범 자원봉사자와 조은경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7월 26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다름과 다양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부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참가자들은 실제 여러 부부갈등 사례를 듣고 내 상황과 비슷해서 더 공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오는 9월 27일(목) “외도에 대한 대처”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실무수습 진행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6월부터 7월까지 2기에 걸쳐 각 2주간씩 진행되었다.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 과정에 수습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 사례를 체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적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접수 안내, 인터넷상담 및 전화상담, 법률구조 서류 검토, 본소 면접상담 및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소장 등 법률구조 서류 작성, 각 교육강좌 참관 등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실무수습생 명단 (5명) :

- 1기 6월 25일 ~ 7월 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박성렬 / 2학년 이동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강화영

- 2기 7월 9일 ~ 7월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이유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조운민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7.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7.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7.25.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7/2-8/24)

신혜주, 권은후, 김다훈, 김해찬, 박현조, 박현진, 신혜민, 임예영, 장우진, 최슬지, 홍동현, 강수지, 김건태, 유승민, 이지민, 최지은

●이대 현장실습 연수 (7/2-8/31)

최수연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16일 광배희 소장의 대법원장 환담에 배석하였으며, 23일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광배희 소장, 신임 양육비이행관리원장과 환담

광배희 소장은 7월 4일 신임인사차 본소를 방문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윤경 양육비상담본부장과 장정인 위탁지원부장 그리고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배석하였다.

● ● ● **고맙습니다**

2018년 7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태주, 문동주,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배우미, 신수경, 안서연, 윤원섭, 이혜민, 이효재, 주소희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이승주, 장철진,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오준석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예찬, 김중근, 이민주, 한 솔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 2회, 가사상담 2회를 실시하였다. 7월 6일 동해소방서 직원대상, 11일 도계여자중학교 직원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10일 법률구조지원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5회 실시하였다. 7월 23일 1366 경기북부센터와 연대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법률상담 홍보를 도농역 앞 광장에서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3회, 부모양육안내교육을 1회 실시하였다.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을 15회 실시하였다. 이혼 전·후 가족관계회복사업으로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한 부부 중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주말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4회 실시하였

다. 이상은, 황미옥, 박기대, 윤용원,곽경화, 김재철, 김중기, 이태현, 최현정, 이용원, 박태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 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지법원 2회 실시하였다. 송지민, 이수연, 이혜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7월 4일 인천연수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연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17일 인천선학파출소, 24일 인천동춘지구대를 방문하여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7월 13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4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최효재, 강은혜, 한두환, 한준엽, 김정혜, 공영서, 전태우, 정원진, 구민혜, 박진호, 김진영, 박지훈, 박지현, 황미옥, 소운수, 김현수, 이윤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6월 16일~6월 24일 유숙영 소장이 한국여성재단 '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독일여성운동 탐방연수에 참석하였다. 7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19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울산지부

7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22일 가족상담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전주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회의에서 7월 23일에는 소송구조사업을 홍보하였고, 27일에는 직원 및 수요대상자 대상으로 가족법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지영, 김영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최혜옥, 박형윤, 정아람, 진휘원, 박정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이재경, 김창건, 박진석, 장상현, 정수경, 노문기, 정형준, 이동건, 홍지혜, 여지은,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7월 2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7월 4일, 11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9일, 23일 보호관찰소 위탁 위기가족관계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인욱, 이창희, 이재영, 남상업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6월 26일, 27일, 28일 청주내덕, 가경 노인복지관, 청주시 성안길에서 무료생활법률강좌를 홍보하였다. 7월 3일~4일 청주시민 및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생생법률이야기-무료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2018년 6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6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163건으로 본부가 6,554건, 지부가 5,609건이었다. 본부는 5,80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630건·소장 등 서류작성 72건·소송구조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606건·화해조정 915건·소장 등 서류작성 24건·소송구조 64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80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1.8%→3.0%), 위자료·재산분할(11.4%→12.3%), 양육비(8.3%→8.7%), 면접교섭권(2.6%→2.9%), 친생자존부(2.6%→2.7%), 부양(1.4%→1.6%), 유언·상속(6.4%→7.4%), 가족관계등록부(3.7%→4.2%), 친양자(0.6%→1.0%), 개명(0.7%→0.9%), 파양(0.2%→0.4%), 미성년후견(0.2%→0.5%), 성년후견(1.9%→2.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0.4%→0.5%),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80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34건(17.8%), 전화상담 4,540건(78.2%), 통신 및 인터넷상담 234건(4.0%)이었다.

2018년 7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579			
법률상담 (6,867)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13	5,473	180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544		107	61

* 2018/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5,463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554	1,034	4,540	234			5,808	630	72	44
강릉 (033) 652-9555	94	75	15				90	1		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21	37	52				89	230		2
군산 (063) 442-1560	119	22	40				62	57		
대구 (053) 745-4501	452	207	37	7		출장 90	341	108		3
대전 (042) 520-5258	174	32	142				174			
동해 (033) 535-0188	103	26	76				102			1
목포 (061) 273-2514	121		118	2			120	1		
부천 (032) 667-2314	362	76	197	1			274	88		
성남 (031) 707-6661	389	252	70			출장 20	342	35	7	5
송도 (032) 834-1369	292	54	109	1		출장 1	165	117	1	9
수원 (031) 243-4600	418	131	127	4		출장 59	321	93	1	3
순천 (061) 753-9910	177	76	98				174	1		2
안동 (054) 856-4200	151	15	109				124	27		
울산 (052) 246-9568	121	41	64				105	9	1	6
익산 (063) 851-5113	218	46	172				218			
인천 (032) 865-1120	240	63	141				204	23	2	11
전주 (063) 244-2930	184	61	80	23	20		184			
정읍 (063) 535-3705	106	48	56				104	1	1	
제천 (043) 644-5690	106	37	64				101			5
중구 (02) 2238-6554	365	247	113				360			5
진주 (055) 746-7975	157	68	59				127	25		5
창원·마산 (055) 261-0280	286	108	143				251	32		3
청주 (043) 257-0088	171	48	61				109	55	7	
춘천 (033) 257-4688	193	19	17	1		출장 156	193			
태백 (033) 554-4004	60	28	25			출장 7	60			
평택·안성 (031) 611-4251	171	41	101			출장 12	154	12	4	1
포항 (054) 283-7555	58	5	53				58			
지부총상담	5,609	1,863	2,339	39	20	출장 345	4,606	915	24	64
총 상담	12,163	2,897	6,879	273	20	출장 345	10,414	1,545	96	108

** 2018/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4,240건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를 유기한 친부의 친권을 일부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231

담당 : 정일순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74세)은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이고, 상대방(남, 53세)은 사건본인들의 부이다. 사건본인들의 모는 2004년 사건본인2를 임신 중이던 2007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본인2의 출산을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다 2010년 사망하였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투병하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사건본인들과 왕래를 하였을 뿐이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10년 이상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청구인을 유일한 보호자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어 여권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청주지방법원 2018.5.31.)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8. 5. 31.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19. 7. 31.을 시작으로 매년 7.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5.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

법률구조 2017-347

담당 : 주소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6세)과 피신청인(남, 49세)은 1997년 4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피신청인이 2억 상당의 빚을 지고 가출하여, 2007년 10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보증금 200만 원의 방 한 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피신청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전단지 붙이기, 만두공장, 자동차세차 등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월 70~80만 원의 소득밖에 얻을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이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건본인들이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1)

피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단**** 양육비 청구사건의 2016.8.18.자 심판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7.9.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6.부터 2018.11.까지 6회에 걸쳐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496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3세)은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자, 1999년경 자본금 5천만 원과 담보제공 1억 원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담보 및 운영자금이 뒤떨어지긴 하였으나, 신청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거래처를 하나 둘씩 확보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워 나갔다. 하지만 대형 경쟁업체의 압박과 중소기업의 난립이 시작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에 2004년경 신청인은 새로운 품목을 유통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경영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2009년경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의 사업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하였고, 소유하던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재 신청인은 대리운전 등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05.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의 혼외자가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7-505

담당 : 김한주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12세)와 피고(남, 52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녀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모는 원고의 친부와의 사이에서 원고를 임신 하였으나 2006년 1월25일 홀로 출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와 2006년 5월 1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11일 피고가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빚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면서 2016년 12월 14일 원고의 모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의 모로 지정되었다. 원고의 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녀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창원지방법원 2018. 3. 9.)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393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5세)는 199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5세)을 두었다. 2010년경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피해 원고는 시동생의 가게에 피신하였는데, 피고는 칼을 소지하고 원고를 찾아와 현관문 유리를 부셨다. 이 사건으로 시모와 시동생의 동의하에 피고를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는데, 퇴원 후 피고의 폭력성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2017년 8월경 피고는 술을 마신 후 원고를 근처 편의점으로 불러 내 폭언을 퍼붓고 “너는 맞아야 한다”

며 원고의 얼굴 양쪽을 마구 밀쳤다. 원고가 집으로 도망치자 피고는 “다 죽여 버리겠다”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협박하고 소화기를 들어 문을 부수려 하였다. 사건본인1이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4.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8. 4.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당 매월 5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혼 3년 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댁식구에 의해 쫓겨난
아내의 이혼청구**



법률구조 2017-420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본 건에서는 피고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도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 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피고의 형이 식물인간 상태의 피고를 데리고 간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취하 후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 특정을 마친 사안입니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사건은 원고(여,50세)가 피고(남, 52세)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014년 경 피고는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숙이 이혼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혼이 된 것으로 잘못 알았다가 이혼을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미옥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

법률구조 2017-455

담당 : 강진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37세)과 상대방(여, 34세)은 2007년 7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1세, 8세)을 두었으나, 2014년 2월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이혼 직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으나, 2016년 7월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후부터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월 50만원씩 1년의 기간을 계산한 6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40만원을 요구하며 협의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부산가정법원 2018. 5. 2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6. 1.부터 2019. 9. 30.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동산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465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공사에서 근무하였고 부족함이 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1997.08.경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건축 중이던 건물까지 경매로 매각되어버렸다. 투자에 실패한 신청인은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압류, 추심을 당하였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다. 퇴직 후 신청인은 IMF 여파 및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취업을 하기 매우 어려웠고 일용근로를 하며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신청인의 배우자도 소득활동에 가세하였지만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힘에 벅찼고, 신청인은 더 이상의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과도한 채무를 안게 된 신청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04.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친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490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7세)은 친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건설업을 하던 친부는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친부는 이 대출금을 친인척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친부와 친인척은 이를 해결하면 공사 수주가 잘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공사 한번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6.경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다. 이후 최근에서야 채

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된 신청인이 친인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을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렇듯 친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억울하게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05.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하고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8-74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48세)는 1996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2002년경 원고의 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4,000만 원을 주식 투자로 모두 잃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는 가출 8개월 후 원고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가진 재산이 없는 원고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자 또 다시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원고의 모가 자신을 고소할 거라는 헛소문을 듣고 원고를 찾아와 폭언을 퍼붓고는 다시 사라졌다. 피고를 찾기 위해 시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를 찾을 수는 없었다. 원고는 피고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피고를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5.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 9월 29일(토)
- ▶ 대상 : 자녀를 동반한 비혼모 가족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의내용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결손처분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강의 및 상담
 4.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5.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8월 휴강, 9월 10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2018년 8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9월 27일	7. 외도에 대한 대처
10월 25일	8. 분노 조절 장애
11월 22일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2월 27일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동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